#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(장인홍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1497 발의년월일 : 2020년 5월 22일 발 의 자 : 장인홍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전병주, 양민규, 장상기

최 선, 이호대, 권순선

최기찬, 황인구, 김수규 의원

(9명)

#### 1. 제안이유

○ 요즘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, 소셜 미디어 등의 이용 증가로 실내 생활 위주의 개인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교육청 차원에서의 청소년단체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 수련 및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등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5조).

- 다. 청소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적 인 지원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라. 청소년단체 활동의 안전하고 체계적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(안 제7조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

####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 수련 및 사회성, 창의력 등을 계발하도록 하여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·발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청소년" 이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- 2. "청소년단체"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.
- 3. "교육행정기관"이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본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을 말한다.
- 4. "학교"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 소속 교육행정기관에 적용한다.
-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.
- 제5조(교육감의 책무)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

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- 제6조(예산 등 지원)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행정기관에 대해 청소년단체 활동 등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7조(협력체계의 구축) 교육감은 청소년들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, 자치구,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